

<p>제2021-102호 2021년 5월 28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2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23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21-234호 둔병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 6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215호 도로지정공고(화정면 백아리 13-15번지 외 4필지) 9
- 여수시 공고 제2021-1488호 도로지정(변경) 공고(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산209-6) 10
- 여수시 공고 제2021-1526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1-1537호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1-1544호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정) 22

기 타

회 관								
--------	--	--	--	--	--	--	--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1-20 (‘21. 5. 13.)	‘21. 5. 2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1. 6.	‘21. 9.	여수시 삼신면 초도리 산 87-1번지 지선	에미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1-21 (‘21. 5. 13.)	‘21. 5. 28.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1. 6.	‘21. 9.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1578-5번지 지선	죽촌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1. 5. 28.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8.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8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59-20	20210528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88, 1061-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59-17	20210528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528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남2길 12-1 (광무동)	20210528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둔병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병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따라 기본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5. 28.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둔병항 어촌뉴딜 300사업

2. 사업의 목적

취약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성 증대 도모, 정주여건 및 복지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3. 사업비 소요액 : 3,853백만원

- 국비 2,697백만원, 도비 347백만원, 시비 809백만원 * 자부담 별도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안전난간

- 특화사업 : 마을안길 포장 및 가로등, 다목적회관 및 공동생활관 리모델링, 둔병마을 행복쉼터 신축, 마을쉼터 조성, 랜드마크 동산,

마을입구마당

- S/W사업 :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지역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관리 컨설팅, 마을브랜드 개발 등

2) 사업의 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둔병항 일원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변경)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여수시청 섬자원개발과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개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1	화정면	조발리	331	대	302	84.8	이태순	마을안길 포장 정비 (1~14)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2) 둔병마을 행복쉼터 신축 및 마을쉼터 조성 (5~7)
2	화정면	조발리	331-1	대	191	54.0	둔병새마을회	
3	화정면	조발리	332	묘	278	39.8	배규선	
4	화정면	조발리	332-1	학	109	109	둔병새마을회	
5	화정면	조발리	333-1	대	288	288	둔병새마을회	
6	화정면	조발리	333-2	학	600	600	둔병새마을회	
7	화정면	조발리	333-3	대	169	169	둔병새마을회	
8	화정면	조발리	334	대	354	65.2	김충식	
9	화정면	조발리	335	대	264	55.3	마두석	
10	화정면	조발리	344	대	254	88.16	김경수	
11	화정면	조발리	406	대	294	39.1	이창식	
12	화정면	조발리	408	도	1,004	1,004	국유지(국토교통부)	
13	화정면	조발리	432	도	1,928	1,928	국유지(국토교통부)	
14	화정면	조발리	432-16	대	43	43	국유지(기획재정부)	
14-1	화정면	조발리	400-1	잡	443	443	국유지(기획재정부)	
15	화정면	조발리	320	임	618	45.4	둔병새마을회	공동생활관 리모델링
16	화정면	조발리	330	전	99	99	이택천 외 4인	랜드마크 동산
17	화정면	조발리	408-15	잡	114	114	국유지(기획재정부)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13-15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로 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786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정면 백야리	13-15	47.2	3	185		
	산65-9	32.3	3	255		
	13-16	10.7	5.5	117		
	13-10	26.4	5.4	218		
	산66-13	2.5	2.8	11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28.

여 수 시 장

도로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산209-6번지 상의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 공고 내역

구분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당초	화양면 용주리	산209-6	80	6	49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화양면 용주리	산209-6	39	4	157		

※ 도로지정공고(당초) : 제2020-3203호(2020. 12. 22.)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28.

여 수 시 장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우리시 국동항 내에 선박(폐선)을 방치하여 국동항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6월 10일(목)까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1. 5. 28. ~ 2021. 6. 10. (14일간)
2. 제거대상선박 : 1척(아래와 같음)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폐선을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061-659-3991)로 연락바랍니다.

방치선박(폐선) 제거공고

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 인근			
선 박 제 원	②선명(명칭)	미상	③선박(어선)번호	미상
	④ 선 적 항	미상	⑤ 톤 수	약 5톤(추정)
	⑥ 주요치수	약) 길이 9m × 너비 2 m × 깊이 1 m		
⑦ 관 리 청	여수시		⑧ 관 리 번 호	제2021-1호
⑨ 제거 예정일자	2021년 6월 11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⑩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⑪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⑫ 입찰 보증금	해당없음			

⑬ 방치선박
(폐선)
전경사진



위 선박(어선)은 폐선으로서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6월 10일까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여 수 시 장

1. 조례명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
- 위탁운영 자격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3. 주요 내용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여수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 위탁운영 자격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안 제4조)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3. 개정 조례 및 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21. 5. 28. ~ 6. 17(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675 여수시 시청서4길(학동)

여수시청 보건소(보건행정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659-4203), 팩스(061-659-5839), 직접방문, E-mail(hopes201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7조제2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의 위탁을 받은 자로 본다.

여수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 -----.</p>
<p>제2조(위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여수시내에 둔다.</p>	<p>제2조(위치) ----- 여수시립요양병원----- -----.</p>
<p>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1. <u>의료법인·종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u></p> <p>2. <u>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u></p>	<p>제4조(설치 및 운영) ----- ----- ----- -----</p> <p>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p> <p>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p>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

②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마친 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수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7조(의료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아 -----.

제11조(회계 및 결산)①② (현행과 같음)

② -----2개월

-----.

신 · 구조문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청서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u>(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u>여수시립요양병원</u>----- ----- -----.</p> <p>제2조(위치) ----- -----<u>여수시립요양병원</u>----- ----- ----- ----- ----- ----- ----- ----- ----- -----.</p>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여 수 시 장

1. 조례·규칙 명칭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
- 위탁운영 자격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3. 주요 내용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여수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 위탁운영 자격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안 제4조)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3. 개정 조례 및 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21. 5. 28. ~ 6. 17(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675 여수시 시청서4길(학동)

여수시청 보건소(보건행정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659-4203), 팩스(061-659-5839), 직접방문, E-mail(hopes201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 16조의3제1항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위치)”를 “(설치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여수시립요양병원은 여수시내에 둔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로 보며, 위·수탁 기간은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

여수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여수시립요양병원----- -----.</p>
<p>제2조(위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여수시내에 둔다.</p>	<p>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여수시립요양병원은 여수시내에 둔다.</p>
<p>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종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p>	<p>제4조 (위탁 운영)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서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

②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마친 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수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1.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의료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않는-----

----- 받아 -----
-.

제11조(회계 및 결산)①② (현행과 같음)

③ -----2개월-----

-----.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삭제 2014. 11. 19)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청서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u>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u>(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리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u>여수시립요양병원</u>----- ----- -----.</p> <p>제2조(위치) ----- -----<u>여수시립요양병원</u>----- ----- -----<u>여수시립요양병원</u>----- ----- ----- ----- -----.</p>